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
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82
----------	-----

2023. 11. 28.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이호귀의원 대표발의(10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1. 28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이호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 특히 강남구 내수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나 홍보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,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새로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(안 제5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- 조례안 예고 : 2023. 11. 06. ~ 11. 10.(5일간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북지도시위원회 이호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강남구 지역경제 혁신적으로 활성화되고, 성공적인 자영업과 중소 가공기업들이 번창하기를 열망하는 정책적 입장에서 안 제1조(목적)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강남구 내에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라 하겠음.
- 본 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,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, 제4조(기본계획 수립), 제5조(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), 제6조(시행규칙) 그리고 부칙으로 입안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안 제2조(정의)에서 제시되는 제1호 지역 업체인 강남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말하며, 제2호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은 제1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, 용역, 공사 등을 말하는 것임.
- 안 제4조(기본계획 수립)은 구청장이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나, 통상의 조례들과 같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며, 이 조문을 유지할 경우, 집행 부서에 광범위한 재량에 맡기는 포괄위임 조례안이 될 것임.
- 안 제5조(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)은 본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구청장이 적극적인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을 이끌기 위해 우수생산품 등을 구청 홈페이지나 SNS,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임.
- 현재 강남구는 강남라이프, 강남라이프TV 운영, 미디어 매체 활용을 통한 구

정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, 이러한 매체나 사업을 활용하여 강남구 청년창업이나 일반창업 등 신규 창업자를 신청과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,

- 매출 저하나 사업 반등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를 통해 지역생산품은 물론 해당 업체의 공공 홍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임.
- 이러한 방식의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경우, 사업부서는 지역경제과만이 아닌 정책홍보실이 중심이 되는 부서간 협업방식이 요구될 것이기에 집행부의 부담이 클 수 있으나, 지역경제권에서는 상인단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임.

- 지난 2월 대전시는 지역 민간업체를 위해 “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”라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.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남구 공공 매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업체 등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의도의 조례안이라 할 것이기에 단순히 선언적으로 끝날 조례안이라면 상당히 그 정책아이디어와 가치가 아까울 것임
- 따라서 이 조례안의 발전방안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, 조례안 제명도, “강남구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조례”가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. 끝.